

2015. 3. 10.(화) 14:00
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

업 무 보 고

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

목 차

□ 경기도청

1. (도시주택실) 공동주택 안전관리 1
2. (농정해양국) 해양 선박사고 안전관리 4
3. (재난안전본부)
 - 3-1.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대책 추진 5
 - 3-2.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7
 - 3-3. 실전훈련을 통한 재난대응력 강화 10
 - 3-4.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재난 구호 11
 - 3-5. 재난대비 민·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12
 - 3-6.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·보급 13
4. (축산산림국) 축산물 안전관리 14
5. (교통국)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15
6. (건설국)
 - 6-1. 「예방중심형」 도로관리체계 구축 16
 - 6-2.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17

목 차

7. (북부소방재난본부)

- 7-1.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응급대응체제 구축·운영 18
- 7-2. 신속정확한 출동을 위한 상황관리 전문성 강화 19
- 7-3. 특수 재난사고 대응역량 강화 20

8. (보건복지국) One-stop FOOD 안전관리 대책 21

9. (환경국) 현장중심의 화학사고 예방대책 추진 23

10. (수자원본부)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대비 대책 24

□ 경기도교육청

11. (행정국) 학교급식 안전관리 25

12. (안전지원국)

- 12-1.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종합계획수립 27
- 12-2.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양성 지원 28
- 12-3.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계획 추진 29
- 12-4. 40년 이상 경과 건축물 안전점검 33
- 12-5. 소방·전기분야 안전관리 위탁업체 연계점검 35
- 12-6. 수련·체육시설 및 기숙사(합숙소)안전관리 컨설팅 36

1

공동주택 안전관리 / [도시주택실]

□ 공동주택 현황

(2013년말 기준)

구 분		경기도 공동주택 현황		
		합 계	의무관리	비의무관리
경기도	단지	5,856	3,596	2,260
	동	35,402	29,986	5,416
	세대	2,373,035	2,198,255	174,780

□ 관련 근거

- 주택법,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,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(세부내용 별첨)
 - 의무관리 공동주택¹⁾: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 수립, 정기·수시 점검
 - 비 의무관리 공동주택 : 재난발생 우려 공동주택은 시장·군수가 안전관리계획 직접 수립 및 점검
 - 재해의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은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 재난부서에서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
- * 중점관리시설(A,B,C등급) 및 재난위험시설(D,E등급)로 구분하여 지정 관리

□ 문제점 및 애로사항

-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비해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 부재 등으로 정기·수시 점검 등 안전관리 지난

□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-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 도비지원(세부내용 별첨2)
 - 안전관리 전문업체(한국시설관리공단, 주택관리사협회)를 통해 안전점검 실시('13년 265단지 2.5억, '14년 167단지 1.4억원 지원)
 - * '15년 108단지(1.4억) 지원예정(5월~12월 : 점검기관 위탁계약 체결 및 안전점검 실시)
- 관리주체 안전관리교육 및 공동주택 위기대응 관련 모의훈련 추진

1) 의무관리 공동주택 : 300세대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또는 중앙집중식(지역난방 포함) 난방방식 공동주택, 건축법에 따라 허가된 공동주택으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, 이 외에는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에 해당

별첨 1

공동주택 안전관리 관련 법령발췌

1. 주택법

- 제43조의3 : 소규모 공동주택(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)의 안전관리
 -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 수립·시행 및 안전점검 추진
- 제49조 :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(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해당)
 -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. 필요한 교육 지원
- 제50조 : 안전점검(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해당)
 - 재난발생 예방을 위해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주체가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

2.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

- 제27조 :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
 - 공동주택 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
- 제34조의2조 :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
 - 특정관리대상 지정 공동주택은 안전등급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시설(A.B.C등급) 및 재난위험시설(D.E등급)로 구분 관리
 - 중점관리대상시설 및 재난위험시설은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진단 실시(A~C등급 : 반기1회), (D등급 : 월1회이상), (E등급 : 월2회이상)
 - 점검주체 :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(도 소방재난본부, 시·군 재난부서)

3.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(16층 이상 공동주택)

- 제2조 : 시설물의 구분(16층이상 공동주택은 제2종 시설물에 해당)
- 제4조 :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
 -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·시행
 - * 공동주택 관리주체 :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택관리업체
- 제6조 및 제7조 :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
 -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(년1회) 및 정밀안전진단(경과년수 감안) 실시
 - * 주요 시설물(전기, 가스, 난방시설등)은 주, 일단위로 점검

별첨 2

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

◆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여 주택의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

□ 사업개요

- 법적근거 : 주택법 제43조의3, 경기도 주택조례 제13조 및 제14조
- 지원대상
 -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시장·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
- 점검기관 : 한국시설안전공단, 주택관리사단체(주택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)

□ 그간 추진실적

- '13~14년 소규모 공동주택 432개 단지 안전점검 실시
 - 2013년 : 11개 시·군 265개 단지 완료(도비 250백만원)
 - 2014년 : 15개 시·군 167개 단지 완료(도비 140백만원)
- 안전점검 이후 보수·보강이 필요한 단지에 후속조치 실시
 - 5개 시·군에서 14개 단지에 대해 보조금(1억 7천만원) 지원

□ 2015년 추진계획

- 수원시 등 21개 시·군에서 108개 단지 실시 예정
 - 사업비 : 총 655백만원(도비 140백만원, 시·군비 515백만원)
 - 단지 당 안전점검 비용 : 평균 5~10백만원

시·군명	단지수	시군명	단지수	시군명	단지수
수원시	8	평택시	6	포천시	2
성남시	4	시흥시	11	오산시	3
고양시	5	광명시	3	하남시	2
부천시	9	파주시	2	의왕시	5
안산시	9	김포시	5	여주군	10
안양시	6	구리시	3	가평군	1
의정부시	4	양주시	7	연천군	3

2

해양 선박사고 안전관리 / [농정해양국]

□ 관련 근거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(대통령훈령 제318호) 및 해양수산부 「해양 선박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」

□ 그간 추진상황

- 해양선박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(해수부) : 2014. 8.14.
- 2015년 해사안전시행계획 수립 : 2014.11. 5.
- 해양선박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제정 : 2014.11.19.

□ 주요 임무 : 해수부 사고수습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구조활동 지원 등

- 사고발생 인지 시, 해양경비안전서, 지방해양수산청, 해수부에 상황 전파 및 비상체계 유지

주요 비상연락망

- 해 양 수 산 부 : 종합상황실 (044-200-5895~8), 당직실 (044-200-5590~1)
- 해양경비안전서 : 긴급전화 (122), 평택서 (031-8046-2142), 인천서 (032-888-0112)
 - * 평택서 관할 : 평택시, 화성시, 안산시 인천서 관할 : 시흥시, 김포시
- 지방해양수산청 : 평택청 (031-8053-7791), 인천청 (032-885-0025)
 - * 평택청 관할 : 평택시, 화성시, 안산시 (대부북동 제외), 인천청 관할 : 안산시 (대부북동), 시흥시, 김포시

- 해수부의 사고수습 및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인명구조에 대한 업무지원
 - 관공선 지원, 사망자 및 부상자 후송지원, 병실·영안실 확보 등
- 피해가족 지원 및 피해조치 상황 실시간 파악, 자원봉사 관리 등

□ 향후 계획

-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지속 추진으로 해양 선박사고 예방
 - 노후기관 대체 및 장비개량, 폐어구 수거사업 추진 등을 통한 어선사고 예방
 - 여객선 선착장 시설 점검 등을 통한 여객선 및 도선 승하선 안전사고 예방
 - 어선원재해어선보험 가입지원, 어업인 안전교육 등 선박종사자 안전역량 강화
-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른 사고 대비태세 확립
 - 정부 및 유관기관 등과 공조·협력체계 구축 및 유지
 - 관공선 (2척)을 활용한 지속적 순찰활동과 유사시에 대비한 상시 출동태세 확립
 - 해양 선박사고 대비 분야별 교육·훈련에 대한 적극 지원 및 참여

□ 현장중심 안전관리계획 수립

- 재난 발생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 하도록 경기도 여건과 사회적 이슈, 사고 등을 포함한 분야별 안전관리계획 수립
- (관련근거)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29조
- (주요내용)
 - 풍수해, 설해, 가뭄, 지진 등 자연재난 7개분야
 - 대형화재, 에너지분야, 대형건설공사장 등 사회재난 52개분야

□ 취약지역 지역별·시기별 안전관리 대책 추진

- 화재경계지구·주거용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 등 안전관리 강화
 - 소방차량 출입 곤란지역 소방통로 확보훈련 및 지도 단속 확행
 - 주거용 비닐하우스·컨테이너 주거 인식 야광표식 부착 및 소화기 보급(5,616동)
- 여름철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관리 강화로 인명피해 ZERO화 추진
 - 안전장비 무료대여소 운영(41개소) 및 안전요원 고정 배치(108개소)
- 화재취약시기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 실시(연 1회)
 - 계절별 특성 고려 월별 테마 선정 후 집중 점검(점검대상 확대 10% → 20%)

□ 위험시설물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

- 『시특법』 대상 시설물(16,785개소) 주기적 안전점검
 - 정기점검(연 2회 이상), 정밀점검(연 1회), 정밀 안전진단(4년 1회)
 - * 시특법 대상 시설물 : 건축물 1,215, 시설물 1,542, 공동주택 14,028
- 대형 건설공사장 안전점검(628개소)
 - 해빙기(2월), 우기철(6월), 동절기(11월) 안전점검 및 관계자 교육(안전보건공단 합동)
 - * 공사현장 임시 소방시설(간이 소화장치, 비상경보장치 등) 설치의무 법령 개정 적극 홍보

□ 위기관리 행동매뉴얼 확대 작성 운용

- 다양화된 재난유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위기관리 행동매뉴얼 확대
 - 43개('14년) → 49개('15.3월) → 55개('15년말)
 -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, 다중밀집 건축물붕괴, 공연장 사고 매뉴얼 등

□ 자연재난대비 예방사업 추진 : 8개 분야 825억원

○ 일반예산 사업 : 5개 분야 565억원

- 재해위험지구 정비,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,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,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, 우수저류시설 설치

○ 재난관리기금 활용사업 : 3개분야 260억원

-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, 배수로 개선 등 재해방지대책사업,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

□ 생활 위험요소 범도민 신고 활성화

○ 취약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「도민안전점검청구제」 지속 추진

- 주택(연립, 다세대), 축대·옹벽, 교량, 절개지 등(민간·공공시설물)

* 기동안전점검단 현장안전 전문가 활용(건축2, 토목2, 기계 1)

○ 다양한 채널을 통한 생활주변 위험요소 신고 접수체계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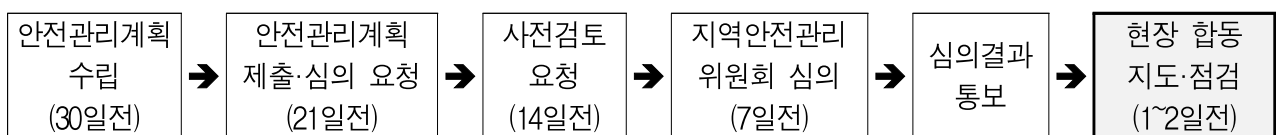
- 인터넷, 카톡 등 SNS 매체를 활용한 주민의 자발적 신고시스템 구축
- 안전모니터 봉사단 및 소방안전지킴이 활용한 재난위험 감시활동 강화

□ 비정상 안전관리 적폐행위 근절 및 자율의식 함양

- 소방안전 5대악 근절을 위한 기획수사 ⇨ 관계자 자율·책임의식 제고
- 특사경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법률 자문단 구성 운영
- 재난사고 조사활동 강화를 위한 「특별조사반」 편성 운영
- 방화관리제도 변경사항 안내 및 지도점검을 통한 자율의식 강화

□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관리 강화

- (행사 30일전) 행사장 안전관리계획 추진사항 확인
- (행사 1~2일전) 행사장 위험요소 유관기관 합동안전점검 실시
- (행사 당일) 합동상황실 운영, 안전관리요원 및 소방력 전진배치



3-2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/ (재난안전본부)

□ 추진목표

- 24시간 깨어있는 조직 운영으로 골든타임 확보, 도민생명 보호
 - 현행) 표본 점검, 센터 대기 중 출동 → 개선) 전수점검, 현장출동 체계
- 대형, 복합 등 재난 초기 우세한 소방력 투입으로 도민 안전 최우선
 - 4개 권역별 거점 소방서 특수대응단 운영(광역 1호 이상 재난 시 신속 지원)

□ 소화전 설치기준 강화로 현장대응 기반 확립

- 소방용수시설(소화전, 저수조) 설치기준 강화 : 현 17,012개 ⇒ 약 30,000개 (13,000↑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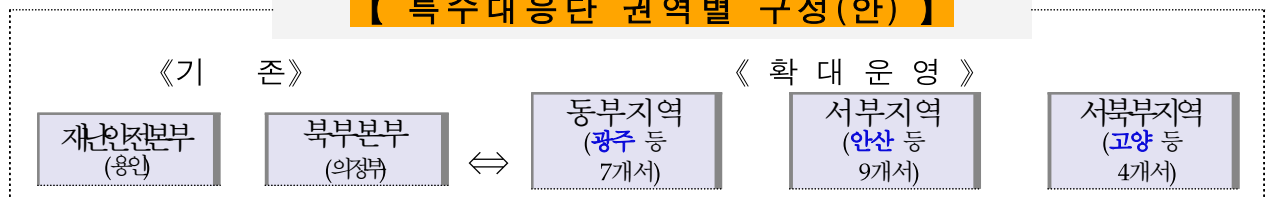
< 현 행 >	⇒	< 개 선 >
▶ 주거·상업·공업지역 100m 이하 ▶ 농어촌 지역 등 140m 이하		▶ 주거·상업·공업지역 50m 이하 ▶ 농어촌지역 마을 주변 50m 이하

- 보강예산 450억원 예상 ⇒ 도·시군 매칭 50%(도 225억원, 시·군 225억원)
 (5개년) 2016~20년 : 연간 90억원(도 45억원, 시군 45억원)
 ※ 미국 소화전 설치 기준 60m 이내(터널의 경우 50m)
- 소화전 설치 시 물탱크(153대) 감축 가능, 기존 인력 459명 예방업무 투입

□ 현장중심 출동체계 개선

- 안전센터 대기중심에서 현장활동 중 출동(112 시스템 도입)
 - * 예방점검, 소방용수 조사 등 현장활동 중 출동
- 권역별 특수대응 전문인력 배치·운영 : 300명(기존 79명 → 확대 221명)

【 특수대응단 권역별 구성(안) 】



- * 평시 소방서 재난현장 출동, 대응1호 이상 지원 출동, 특수재난(유해화학 등) 대응
- * 향후, 각 권역별 60명씩 구성하여 '신속대응군' 운영, 재난현장 초기 출동
- 현장대응 훈련 강화(월 1회 이상)
 - 소방용수 점령, 소방차 통행로 확보, 시설관계자 및 주민 피난대피 훈련 등

○ 현장 대응장비 고성능화 추진

- 특수진압장비(540억) : 고성능 펌프차(서벌 1), 내폭화학차(권역별), 무인파괴 방수차(권역별)
 - ※ 고성능 펌프차 34, 내폭화학차 4, 무인파괴 방수차 4
- 기동력 확보(35억) : 예방점검 및 현장대응 차량 102대(서벌 3대, 승합 15인승)
 - ※ 차량 내 방화복, 공기호흡기, 소화전 개폐기, 동력소방펌프 등 탑재



- 통신망 확보(17억) : 차량용 웹패드(167대) 및 TRS 휴대용 무전기 개인별 지급(1,275대)
 - ※ 예방점검 및 순찰 중 즉시 출동지령 가능한 통신시스템 확보

○ 소방차량 신규·교체 및 대원 안전장비 등 보강

- 특수소방차량 신규보강 및 노후차량 교체 * 노후율 개선 : 20% → 12.3%
 - * 보강계획(115대) : 무인파괴방수차 1, 고가·굴절 11, 펌프 13, 탱크 8, 구조 4, 구급 73, 화학 5
- 개인 안전장비 및 화재·구조·구급장비 등 보강
 - * (개인안전장비) 공기호흡기 1,300점 등 5종 6,148점
 - * (화재장비) 5종 320점, (구조장비) 74종 8,571점, (구급장비) 58종 2,259점

○ 현장활동대원 특수방화복 보급 확대

기준 수량	현 보유			부족분	필요수량	구매계획	
	계	사용중	착용보류*			1차 (본예산반영)	2차 (추경확보)
11,468	11,257	6,762	4,495	211	8,046벌 (49.6억)	5,790벌 (35.8억)	2,256벌 (13.8억)
현장 2벌 행정 1벌		내 용연수(3년) 경과 : 3,340벌	미검정 제품		▶ 착용보류 4,495 ▶ 부족분 211 ▶ 노후량 3,340	▶ 착용보류 4,495 ▶ 부족분 211 ▶ 노후량 1,084	▶ 노후량 2,256

* 방화복 생산업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무검정 제품 납품에 따른 사용보류 조치

- (1차) 2015년도 소방용 특수방화복 조기 구매 추진 → 5월한 구매완료
- (2차) 미교체 노후 특수방화복 추경예산 확보 후 전량 교체 (2,256벌)

□ 예방 및 현장 전문인력 보강

- 소방서별 예방 및 현장전문 인력 배치(678명) ⇒ 2015년 정원 증가

구 분	총원	예방 및 현장					신속대응군 (특수부대 출신 등)	전문분야		
		소방	건축	토목	화공	구급		변호사등	언론	전산
계	678명	169	68	68	69	76	200	16	2	10
1단계(1월)	168명	130			1	35	2			
2단계(9월)	510명	39	68	68	68	41	198	16	2	10

- 기존 署별 2~3명을 署별 10명 이상 배치, 예방활동 중 현장 출동
- 예방점검 및 현장활동 중 화재 등 재난출동 지령 접보 후 현장 출동
 - ※ 차량 내 방화복, 공기호흡기, 소화전 개폐기, 동력소방펌프 등 탑재
- 전문가 특별채용(18명) : 변호사, 고시 합격자 등 16(소방경), 언론 2 (소방장)
 - ▶ 전문행정업무 및 사법업무 수행, 언론 대응 전담

- 道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의한 연차적 인력증원

구 분	계	‘15년	‘16년	‘17년	‘18년	‘19년	‘20년	‘21년	‘22년
인력	4,294명	495	495	495	495	578	578	578	580
소요예산	2,496억원	288	288	288	288	336	336	336	336

* 1인당 : 58,181천원(연봉 42,306천원 / 교육비 6,372천원 / 피복비 1,916천원 / 안전장비 7,587천원)

- 법에 의한 의무 점검 탈피, 무상점검 및 소방시설 수리 봉사 실시
 - 감지기 탈착, 표시등·퓨즈 교환, 경미한 시설 불량 무료 수리
 - 중대한 결함으로 수리가 곤란한 시설 ⇒ 전문가 의뢰 상담 등 조치
 - ※ 시·군·구·동별 소방시설업체 정보 제공, 무료 견적 시스템 안내 등
 - 고질적 위반 대상은 특사경이 직접 수사 후 의법조치 및 시설 개선
- 시설주 및 관계자에 대한 피난대피 및 소방시설 작동 등 교육훈련 병행 실시

□ 북부본부 기능강화 및 안전사각지대 해소

- 북부본부 예방교육훈련 및 대응상황기능 강화 (현행 2과 74명 ⇒ 강화 3과 107명)
 - 예방교육훈련과 신설 : 총 12명(3개팀 - 재난안전, 교육훈련, 홍보)
 - 재난대응상황 전문화를 위해 총 21명 보강(대응, 화재조사사법, 상황 보강)

- 안전센터 신설(3개소) : 안산 반월, 고양 화전, 양주 장흥

* 향후, 소방관서 설치 연구용역 후 센터 신설 우선순위 선정 체계적 관리

3-3 실전훈련을 통한 재난대응력 강화 / [재난안전본부]

□ 재난안전총괄 조정회의 운영

- (운영원칙) 매월 1회 정례적 운영(실전훈련 - 9회, 도상훈련 - 3회)
 - 월별·시기별 특성고려 발생 위험빈도 높은 재난유형 선정
 - 실전 중심의 회의(훈련)를 통해 각 기관별 재난대응 실행능력 확보
- (추진방법) 재난유형별 실제훈련 후 통제관(수습책임부서) 주관 수습훈련
 - (도지사 주재) 3월, 5월, 9월, 11월(재난안전본부 주관)
 - (실·국장 주재) 4월, 6월, 7월, 8월, 10월(재난수습 책임 실·국 주관)
 - * 동절기(1, 2, 12월)는 해당 실·국 주관 도상훈련 실시
- 국가 및 도 단위 재난대응 훈련과 연계 실시로 훈련효과 극대화
 - 재난안전한국훈련(5월), 초광역 대응 긴급구조종합훈련(9월)

□ 실화재 훈련시설 활용 현장지휘훈련 추진

- (목 적) 불시 재난상황부여, 실전 상황판단 및 문제해결·지휘역량 배양
- (대 상) 소방서 현장대응단장, 센터장 등 지휘관 및 신규임용자
- (훈련주기) 반기별 각 1회, 7시간
- (훈련방법) 팀단위(5명) 8개팀 로테이션 임무수행으로 다양한 현장체험

<실화재 훈련시설(15. 3월 준공예정, 경기도 소방학교)>

			
* 일반건물화재 (건축물화재)	* 위험물화재 (유류화재)	* 공장화재 (가스화재)	* 특수화재 훈련 (백드래프트, 플래쉬오버)

【실화재 훈련장 시설현황】

- ▶ 훈련시스템 : 건물화재, 공장화재, 농연검색구조, 위험물화재, 화재 특수현상 체험
- ▶ 규모 : 5개동(3층 2동, 2층 2동, 위험물시설 1동),
- ▶ 면적 : (부지) 7,478㎡, (건축면적) 1,037㎡, (연면적) 2,578㎡

□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

- 자연재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(상시)
 - 여름철(매년 5.15 ~ 10.15), 겨울철(매년 12.1 ~ 익년 3.15)
 - (역할) 기상상황에 따라 5단계 상황 근무체계 유지, 상황전파 등
 - * <기상정책자문관 운영> 도내 지역별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으로 자연재난 예방
- 사회재난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(필요시)
 -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인정하는 시기
 - * <준비단계> 재난안전본부 “재난종합지휘센터”에서 24시간 상황유지
 - * <비상단계> 재난안전대책본부 본격 가동, 13개 협업기능별 대응체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

□ 경기도 지역재난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관련 조례 개정

- 경기도 지역재난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: 20명
-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
 - * 피해 지원에 대한 적용범위와 지원대상, 지원기준 정비(확대)
 - * 적용범위 : 사망 5명, 이재민 100명, 재산피해 50억원이상의 재난

□ 신속·체계적 이재민 구호물품 전달체제 구축

- 재해 긴급구호물품 신속전달을 위한 분산 비축(23,819세트)
- 재해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확보 (2,548개소)
- 이재민 대상 비상급식 및 급수 지원체제 구축 (취사차량 2대, 급수차량 477대)
- 이재민 재해구호기금 신속 지원
 - 주택 침수 및 파손피해 이재민 응급 구호비 지원(1,493백만원)
 - 재해구호물자 구입(응급구호 6,000세트, 취사구호 1,000세트, 573백만원)

□ 재난경험자 심리안정 지원 강화

- 재난지역 현장방문 심리안정 상담 및 고위험 대상자 책임상담제 실시
- 재난심리상담 전문가 인력Pool 재정비(255명)

3-5 재난대비 민·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/ (재난안전본부)

□ 의용소방대 현장지원 기능 강화

- 여성의용소방대 『심폐소생술 전담 교육팀』 구성·운영
 - 인명소생술(BLS instructor) 자격취득 지원 및 교육팀 구성(700명-135개대×5명~6명)
 - *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통해 연간 10만명 이상 도민 CPR교육 실시
- 대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추진(7개 과정 804명)
- 전담의소대 및 공단·전통시장 의용소방대 운영을 통한 지역 안전 강화
 - (전담) 8개대 159명, (공단) 15개대 344명, (전통시장) 112개소 710명
-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기진작 대책
 - 소방활동 지원 우수대원 표창 확대(390명 → 600명)
 - 자녀 장학금 지원(80명) 및 선진지 견학(120명)

□ 산악 및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

- 행락철 등 산악사고 대응을 위한 산악구조대 운영(7개대)
 - 의용소방대 전문 산악구조대(4개대 74명), 민간산악구조대(3개대 172명)
 - * 운영장소 : 광교산, 북한산, 관악산, 명지산, 청계산, 도봉산, 천마산 등
- 물놀이 사고 다발지역 안전을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(32개소)
 - 소방공무원,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안전요원 및 구조요원 배치(320명)
 - * 운영장소 : 32개소(하천 24, 강 4, 호수 2, 해안 1, 계곡 1)

□ 자율방재단 및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활성화

- 자연재난 복구지원 강화를 위한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(7,884명)
 - 자율방재단 조직을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
 - * (일반) 현장운영반, 대피소운영반 등, (전문) 인명구조반, 급수지원반, 방역반, 응급복구반 등
 - 현장대응 능력 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간 위탁교육 추진
- 안전모니터 봉사단 활용 생활주변 위험요소 해소
 - 봉사단원 1인 1구역 관찰제 운영 * 구성현황 : 53,981명(자영업·주부·택시기사 등)
 - 민간전문가(건축사, 기사 등) 봉사단원 위촉 후 점검요원으로 활용

3-6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·보급 / (재난안전본부)

□ 범도민 안전문화 붐 조성을 위한 실천운동 전개

○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에 대한 시기별·분야별 집중 홍보

- 시기별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에 대비 관계기관과 공동 전개
- 「안전문화 강조주간」 운영 및 우수사례 발굴, 유공자 표창(12월 안전문화대상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▶ 겨울철 재난	▶ 대설·한파	▶ 해빙가산불 ▶ 신학기 어린이 안전	▶ 봄 행락철	▶ 어린이 안전 ▶ 안전한국훈련	▶ 풍수해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▶ 물놀이·휴가 ▶ 산업안전주간	▶ 폭염·태풍	▶ 태풍 ▶ 신학기 어린이 안전	▶ 가을 행락철	▶ 화재산불 ▶ 안전문화의 달	▶ 겨울철 재난 ▶ 음주운전 예방

○ 일상 속 필수실천 안전기준 등 언론·시민단체 협력 안전캠페인 전개

- 안전문화운동협의회 분과별(사회·생활·교통·산업) 핵심과제 선정 및 실천방안 도출
- * 전 좌석 안전띠 매기, 스쿨존 30km/h 이하 서행, 작업장 안전수칙, 위법행위·위험상황 신고하기 등

□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·관 협력 체계 구축

○ 도민 맞춤형 안전문화 통합정보 제공(「경기도119」 앱)

- 화재(소방), 교통(도로, 철도), 전기, 가스, 산림, 해양 등 9개 분야별 기관 협업

○ 도내 안전체험시설 및 관련기관 간 연계 프로그램 추진

- 재난안전체험시설(8), 교통안전체험시설(17), 소방서(34), 경찰서(41) 등

○ 학생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道 - 道 교육청 협력 네트워크 강화

- 학생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난안전체험관 공동 건립·운영 추진
- * (도 교육청) 국비 79.9억원 및 부지확보 완료, 도비 매칭 20억 지원요청
- 도내 초·중·고교 재난훈련 담당교사 재난안전교육 추진(604명)
- 퇴직 소방공무원 활용 각급 학교 안전교육 교사제 운영

□ 『굿모닝 어린이 119 페스티벌 [가칭]』 재난안전 체험전 개최

○ (기간) '15. 5. 29~ 31.[3일간], (장소) 안산시 호수공원

○ 체험, 전시·공연, 안전대회 등 참여와 체험위주의 행사프로그램 운영

- * 화재, 교통 등 주제별 6개 테마, 50여개 체험프로그램 운영

4

축산물 안전관리 / [축산산림국]

□ 관리 현황

- 관리범위 : 축산물의 생산·도축·가공·유통단계의 안전관리
- 관리업소 : 17,129개소(도축장, 축산물가공장, 정육점 등)
- 관련근거 :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(출입·검사·수거)
 - 축산물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위생상 문제점을 조사하고 수거 등을 통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
 - * 2015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(축산물위생)

□ 추진 현황

- 축산물 안전관리 단계별 추진
 - 사육단계 : 불법도축조사(5회), 부화중지란 유통방지 영업자교육(1회)
 - 도축단계 : 도축검사 3,161,740두, 잔류물질 201,374건, 미생물 41,727건
 - * 부적합 1,291건(도축검사 1,142, 잔류물질 148, 미생물 1)
 - 판매단계 : 점검 3,792개소(설날 1,060, 추석 1,006, 여름철 1,180, 행락철 546)
 - * 부적합 168개소(설날 56, 추석 46, 여름철 43, 행락철 23)
 - 부정·불량식품 민원업무처리 : 194건
 - * 행정처분(2014년) : 299건(식육 265, 유가공 16, 알가공 18)
- 축산물 위생안전관리(HACCP) 조사평가
 - 도축장 위생관리 시도 교차평가(道내 19개소 - 상 9, 중 8, 하 2)
 - 축산물 HACCP작업장 평가 : 243개소(적합 67, 보완 112, 부적합 64)

□ 문제점 및 애로사항

- 축산물 작업장 수도권 집중으로 축산물 안전관리 인력 부족
 - 축산물작업장(전국 77,602개소, 경기도 17,129개소 22%)
- 영세업체 등 위생관리 취약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필요

□ 향후 계획

- 상습 위반업체 정보를 활용한 축산물 안전관리 위해요소 사전예방
 - 위반업체 정보분석에 의한 테마별, 시기별 기획감시 활동 강화
- 소비자 불만신고 신속대응 및 축산물위생감시원 합동단속 강화

5

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/ (교통국)

☐ 수립목적

- 교통사고로 인한 개인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선진교통 문화 정착을 위함

☐ 관계법령

- 「교통안전법」 제15조, 제16조, 제17조, 제18조
 - 국가 및 특별시장, 광역시장, 시장 또는 군수는 5년 단위의 국가·지방교통 안전 기본계획 수립,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

☐ 추진현황

-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(2012~2016)
- ‘09. 2월 : 제1차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(2009~2011)
- ‘12. 3월 : 제2차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(2012~2016)
- ‘15. 3월 : ‘15년 경기도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(예정)

☐ 추진 할 사항

-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구축
-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
- 첨단교통정보체계 확대 구축
- 교통문화 선진화 방안
- 운수업체 관리·감독 강화

☐ 향후 계획

- 국토교통부에 교통안전시행계획 제출·추진실적 평가
-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 지속 추진

6-1 「예방중심형」 도로관리체계 구축 / (건설국)

□ 관련근거

- 「도로법」 제50조, 「도로의 유지·보수 등에 관한 규칙」 제6조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도로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바라는 민원은 매년 지속적 증가
 - 최근 언론에 이슈가 된 도로침하, 포트홀 등으로 도민불안 가중
- 도로용량은 크게 증가된 반면 도로안전을 위한 재정은 매년 감소
-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한 “사고대응형” 도로관리 체계
 - 관리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여 관리하는 후진적 관리체계

□ 추진현황

- 예방중심형 「도로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」 수립('15)
 - 도로 위험시설물 DB구축, 연차별 보강계획 수립,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
- 과학적 도로 포장관리시스템(PMS)¹⁾ 구축('15~ '16)
 - 제한된 유지보수 예산으로 최적의 유지보수정책 수립
 - * 방대한 도로망 관리, 파손 예측구간 사전보수, 보수예산의 효율적 분배 등
- 포트홀 택시 신고시스템 운영('15)
 - 개인택시를 활용한 실시간 포트홀 신고로 신속한 보수체계 구축
 - * 시스템 구축관련 MOU 체결(道, 개인택시운송조합, 스마트카드사) 및 운영
- 「경기도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정('15)
 - 도로 및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주기, 방법 등을 규정

□ 향후계획

- 도로관리정책 위주의 패러다임 전환 “사고대응형” ⇨ “예방중심형”
 - 도로 안전관리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편성(목표 도로예산의 30%)

1) PMS(Pavement Management System) : 도로 포장과 관련되는 계획, 설계, 유지보수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최적 포장의 질을 최저의 비용을 통해 유지하는 시스템

6-2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/ [건설국]

□ 관련 근거

- 도로교통 안전 개선사업 계획(국민안전처)
-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 계획(행정자치부)

□ 추진현황

- 도로교통 안전 개선사업
 -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 : 수원 등 19개 시·군 62개소(17억원)
 - * '03~'14까지 2,646억원 투입 → 1,710개소 정비
 -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: 안양, 고양 각 1개소(3.5억원)
 - * '03~'14까지 540억원 투입 → 339개소 정비
 -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: 가평, 화성 각 1개소(5.6억원)
 - * '10~'14까지 103억원 투입 → 42개소 설치
 -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: 양평 1개소(2.2km 20억원)
 - * '09~'14까지 513억원 투입 → 54km 정비조성
-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
 - 15년도 안성시 등 7개소 7.6km 사업추진(44억원)
 - * 1차 중장기('04~'13) 사업에 679억원 투입→ 26개소 48km 정비

□ 문제점 및 애로사항

- 지방도(시·군도 포함)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·사업대상 감소추세로 사업효과 저감
 - *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방도로는 관리청인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향후 지속적인 국비지원 감소가 예상됨

□ 향후 계획

- 시·군과 지속적 업무협의를 통한 적기 사업완료로 사업효과 극대화
- 국비지원 사업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중앙부처 지속 협의
 - * 안전은 국가, 지방정부별로 마련하는 것이 아닌 국가차원의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됨 (도에서도 시·군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 검토)

7-1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응급대응체제 구축·운영 / (북부소방재난본부)

□ 관련 근거
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(지역긴급구조통제단)
-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(총리령 제1105호)

□ 추진 현황

- ‘119종합상황실’ 설치로 상황관리 조정기능 강화
 - 11개 소방서별 분산 운영 중인 119수보·지령시스템을 북부분부로 통합
 - * 통합수보대(17대), 상황요원(33명), 장비(65종 2,061점)를 배치하여 24시간 대응
 - 출동체계 변경 : 재난위치 기준 관할소방서 ⇨ 최근거리 안전센터 출동
- 특수·대형재난 발생대비 신속한 광역대응체계 가동
 - 재난발생 시 소방력 집중 운용하는 대응 1,2,3호 단계별 지휘체계 운영
 - 초기에 소방력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비상발령권자* 확대
 - * 비상발령권자 : 관할 소방서장 → 선착대장, 현장대응단장, 상황팀장 등
- 재난대비 민·관 안전네트워크 구축
 - 의소대, 군경찰 등 외부자원*과 지원체계 구축으로 예비 소방력 확보
 - * 의용소방대 4,310명, 군부대 82개, 경찰서 13개, 중장비업체 29개 등

□ 문제점

- ‘13년 북부분부 방호구조과 폐지 이후 예방·교육·훈련 기능 약화
 - ‘13년 대비 ‘14년 화재 인명피해 증가(사망자 21명 ➡ 38명, 81% ↑)

< 2014년 화재 피해 증가현황 >

구분 년도	건수	인명피해(명)			재산피해(백만원)		
		계	사 망	부 상	계	부동산	동 산
2014년	3,023	326	38	288	76,985	38,460	38,525
2013년	2,650	209	21	188	48,312	21,974	26,338
증가(%) ↑	14	56	81	53	59	75	46

□ 개선건의

- 북부분부 예방교육훈련과 설치 및 대응·상황기능 강화

7-2 신속·정확한 출동을 위한 상황관리 전문성 강화 / (북부소방재난본부)

□ 수요자 중심 119신고서비스 제공

- 스마트 환경에 따른 최첨단 디지털 다매체 신고체계 도입
 - 다매체 신고시스템(문자, SNS, MMS, 앱) 연계 119신고 접수처리
 - 상황 수보시스템에 경기도 콜센터(120)를 통한 신고 연계
-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「U-119 안심콜」 시스템 운영
 - 사전 등록된 신고자 정보 및 위치 확인으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
 - 지역 장애인 재활센터와 연계 24시간 응급안전서비스 제공
- 다국적 외국인 대상 119신고서비스 제공
 - 외국인 119신고영상 제작 ➡ 상황요원 반복시청·숙달 ➡ 빠른 통역 연결
 - 「BBB코리아」 통역봉사자 연결체계 구축으로 원활한 119신고 처리 가능

*  (비비비 코리아) : 19개국 언어에 능통한 언어·문화 자원봉사단

〈 12개국 상황별(화재·구조·구급) 119신고영상 〉



□ 상황요원 전문성 강화

- 재난유형별 119상황관리 「표준대응 가이드 라인」 집중 숙달훈련
 - 화재대상물별 수보 프로토콜(26종), 구조사고 유형별 프로토콜(17종)
 - 증상별 핵심질문, 중증도 분류, 유관기관 통보 등 구급 프로토콜(18종)
-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리조사(도상훈련) 실시
 - 현장 이해도 제고를 위한 지역 주요도로, 최단거리 출동로 등 조사
 - 계절별, 시기별, 장소별 취약대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안 도출

7-3 특수 재난사고 대응역량 강화 / (북부소방재난본부)

□ 특수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·훈련 실시

- 특수재난별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 실시
 - 산악사고 훈련 : 수직·수평구조, 암벽사고 구조기술 습득(3,9,12월)
 - 수난사고 훈련 : 사고위험지역 적응, 수난구조 자격 취득(5,7,10월)
 - 터널화재 훈련 : 한국도로공사, 고속도로 순찰대 등 유관기관 합동훈련
 - 화학사고 훈련 : 전문 화학구조대(양주) 운영 및 유관기관 합동훈련
 - 지하화재 훈련 : 주요 역사, 지하상가 연합회 등 유관기관 합동훈련
- 특수상황 대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실시
 - DMZ 접경지 폭발물 사고대응 : 공군 EOD 위탁교육 추진(6월)
 - * 사례 : '12년 포천시 고물상 내 유탄발사기 연습탄 분리 중 폭발사고(사상자 4명)
 - * 군, 경찰 등 전문기관 강사초빙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
 - 고공 인명구조 : 고층건물 및 수목, 철탑 등 고공구조 전문인력 양성
 - * 아보리스트 교육(5월) 및 로프 Access교육(8월) 과정 이수
- 화재진화사, 인명구조사 등 구조대원별 전문자격 취득 추진
 - 취득목표 : 화재진화사(56%→61%), 인명구조사(67%→70%)

□ 유해화학물질 취급대상별 맞춤형 대응 계획 수립

- 대 상 : 자체방재 계획¹⁾ 수립대상(LG디스플레이 등 16개소)
 - * 양주 10, 파주 3, 동두천 2, 포천 1
- 방 법 : 대상별 현장방문을 통한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
- 중점 추진사항
 - 건물개황 및 출동경로 파악 등 인명구조활동을 위한 작전계획 수립
 - 업체별 취급물질 성상, 중화제 보유현황 등 대응정보 작성 및 관리

1)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 관련 사고대비물질(69종)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대상

□ 관련 근거

- 「식품위생법」 제22조(출입 · 검사 · 수거 등)
- 2015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(식품관련업체 및 식중독 예방관리)
 - * 국정과제 4대약(불량식품) 근절 ⇒ 식약처 :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구현

□ 추진현황

- 식품위생업소 지도 · 점검 : 134,117개소(위반 9,600개소)
 - 식품제조가공업 등 : 32,364개소(위반 2,396)
 - 식품접객업 : 101,753개소(위반 7,204)
- 국민다소비식품 등 수거 · 검사 : 21,679건(부적합 201건)
 - 가공식품 12,791건(부적합 82), 농 · 수산물 등 8,888건(부적합 119)
- 학교 등 집중관리업체 지도·점검 : 13,842개소(위반 117개소)
- 횡집 등 어·패류 취급업소 식중독 예방 진단서비스 : 1,370개소
- 대국민 홍보 및 관련단체 교육확대 및 지원
 - 하절기 경기 “G-버스” 식중독 영상홍보 : 894대(1,788개)
 - 집단급식소 영양사·조리사 특별 위생교육 : 31회 / 12,615명

□ 문제점 및 애로사항

- 농 · 수산물 안전관리업무 이관(식약처 농수산물안전과 신설)
 - *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 → 식품의약품안전처
- 도 및 시 · 군은 기구 및 인력 증원 없어 원활한 업무수행 애로
 - ⇒ 식품안전과 내 「농 · 수산물 전담관리팀」 신설
 - 농수산물 관리팀 : 팀장 1명, 팀원 3명
 - 농 · 수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보강
 - * 서울시 식품안전과 7개팀 45명 / 경기도 식품안전과 4개팀 17명

□ 향후 계획

- 농·수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
- 현장맞춤형 기술지도사업 확대
- 식품제조가공업체 안전관리
-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계절·테마별 기획감시 강화
- 학교급식소 등 대량환자 발생 우려시설 정보공유 및 확산방지
 - 상시 모니터링 및 정보공유로 발생시 신속한 원인조사 및 조치
- “빅데이터”를 활용한 시설·계절별 발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·점검 추진
- 지하수 오염원 추적관리 과학적 대응
 - 지하수 사용 식품위생업체 살균소독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: 반기별
- 식중독 예방 대국민 홍보 및 교육 확대 지원

9

현장중심의 화학사고 예방대책 추진/ [환경국]

□ 관련 근거 및 추진현황

- 화학물질관리법, 道 화학물질관리 조례상 지자체 책무 이행
 - 사업장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행·재정적 지원, 사고대응 추진
 - 유독물질 영업허가사업장 : 2,217개소

구분	계	제조업	사용업	보관·저장업	판매업	운반업
허가업체(개소)	2,217	195	638	60	1,282	42

* 유독물질 : 불산, 염산, 수산화나트륨, 벤젠 등 722종 지정

- 취급부주의 등에 의한 화학사고 신속 대응체계 구축
 - 사업장 초기 응급조치, 기관 간 협조체계 및 주민 전파체계 중점 구축
 - 지역별(시군별, 취약지역)로 방제약품 비상 공급업체 지정·관리
 - * 소방(초동대응), 환경청(현장수습조정), 화학물질안전원(방제정보) 등과 협력

□ 문 제 점

- 주기적 점검과 안전교육 실시에도 불구하고, 화학사고는 지속 발생
 - 道 사고건수 : 31건('13년) → 36건('14년)
 ⇒ 작업자 부주의, 도로운송 사고 등 **안전수칙 미준수**가 주요원인

□ 향후 계획

- 사후 지도·점검과 함께 사전 예방관리 체계 강화
 - 사고대비물질 및 다량취급사업장 등의 최신자료 주기적 확보
 -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·보수 지원(736백만원)
 - * 중소기업의 개스킷, 방류벽 및 누출가스 감지센터 등 설치비 지원
- 사고다발업종·대상자별 역할·사고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(45백만원)
 - 취급 시설·물질별 주요 사고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
 - * 이송배관의 관리방법, 개인보호구 등 방재장비 사용요령
- 화학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환경안전컨설팅 추진
 - 사업장 단위 자체 사고대응 모의훈련에 진단팀을 구성하여 컨설팅

10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대비 대책 / (수자원본부)

□ 관련 근거

-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및 「수도법」
- 「대규모 수질오염」 위기관리 표준매뉴얼(환경부)

□ 추진현황

- 「경기도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」 개정('15.1월)
 - 환경부 및 시·군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는 매뉴얼 제정·운영 중
 - * 2014. 10월 : 수질오염사고 관련 전문관 2명(환경5급1, 환경6급1) 배치
-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행위 지도·단속(연중) 및 「팔당상수원 통행제한도로 운행차량」 합동단속 추진(매월 1회)
 - '14년 지도·단속 실적 : 10,145건 적발(고발 4, 현지시정 10,134)
 - 팔당상수원 통행제한도로 4개 노선 62.8km('14년 30건 검문 / 위반건수 없음)
- 「갈수기(매년 12월~익년 4월) 수질관리 대책」 수립·추진
 - '14년 실적 : 수질오염원 단속 5,312개소/적발 492개소(행정처분 및 고발)

□ 문 제 점

- 수질오염사고는 사고원인 및 유형이 다양하여 근원적 예방 지난
 - 최근 5년간('10~'14) 수질오염사고 발생건수 : 111건(유류 63, 오폐수 13, 화학물질 22, 화재수 6, 기타 7)
- 현재 장기간 지속되는 가뭄으로 하천수량이 부족한 바 봄철 강우에 따른 물고기 폐사 발생 우려

□ 향후계획

- 수질오염사고 대비 환경부, 시·군, 유관기관 합동방제훈련 실시
 - '15년 상·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예정(상반기 한강청 주관, 하반기 道 주관)
-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행위 지도·단속 및 갈수기 수질관리 대책 지속추진

□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현황

- 최근 5년간('10년~'14년) 총 48건, 평균 9.6건이 발생하였으며 전체학교 대비 0.3%임

〈최근 5년간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현황〉

구분	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	계
발생건수 (건)	9	7	14	6	12	48건 (초13, 중6, 고29)
환자수 (명)	1,674	476	439	215	1,021	3,825명 (초479, 중204, 고3142)

※ 전국 발생건수 2010년~2014년 220건(평균 44건)

- 완제품(김치, 육가공품), 돈육김치찌개, 음용수가 식중독 사고의 원인, 그외 원인불명
- 노로바이러스, , 병원성대장균,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순으로 식중독균 검출

* 가장 최근 육류 및 식육가공품 사용 증가로 인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 증가 추세

□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조치 및 대책

-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시 교육청 및 시·군·구청 즉시 신고하고, 유증상 환자 적절한 치료 조치 및 역학조사 실시
-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로 학교급식 위생·안전점검 강화, 학교급식 관계자 위생·안전교육 실시, '학교급식 안전매뉴얼' 보급 활용, 노후 급식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

○ 학교급식 위생·안전점검 강화

- 유관기관(지방식약청, 지자체)과 연1회 학교급식 전수 합동점검 실시
- 2식 이상 고등학교 개학전 특별점검 실시(2, 8월)
- 급식실시교 연 2회 정기 위생·안전점검 외 위생관리 취약교 집중관리

○ 학교급식관계자 위생·안전교육 실시

- 개학시기 연2회 학교장, 영양(교)사 전체 대상 식중독 예방교육 실시
('15.2~3월, 8~9월)
- '학교급식 안전매뉴얼' 활용하여 학교급식 식중독, 산업재해 등 예방교육
및 안전사고 모의훈련 실시
- 최근 식중독 발생교, 민원 다수 발생교, 1일 2식이상 급식학교 대상
으로 학교급식 위생·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추진

○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추진

- 10년이상 노후된 급식실의 현대화 추진으로 쾌적하고 위생적인
급식환경 제공('14년 노후급식 시설개선 지원 1,168교 336억원)
- 학교급식실 표준화를 위한 「학교급식 시설개선 매뉴얼」 개정·
보급('15년 상반기)
- 2015년 급식기구 및 시설개선비 370억 확보
- * 급식실 현대화는 교당 소요액이 많아 학교별 여건에 따라 교육부 특교, 지자체
교육협력 함께 추진

○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

-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및 원산지 표시제 준수
-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
- * 계약법령 준수, 전자조달시스템 활용, 우수식재료 공동구매 확산, 학교급식
지원센터 이용

12-1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종합계획수립/안전지원국

□ 관련 근거

-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

□ 추진현황

-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종합계획수립

- 사업개요

- *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제정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

- 추진방침

- * 사업 시기 : 2015. 3.
 - * 내용 :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 목적 수립
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 기본방향 정립
체험학습 학생안전향상 방안 수립
체험학습 안전관련 기관 연계 방안 마련
안전교육 운영지원 방안 마련
학생안전관리 감독방안

□ 문제점 및 애로사항

- 세월호 이후 현장체험학습의 전반적인 침체

-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

- * 교육현장,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체험학습관련 규제 완화 필요함

□ 향후 계획

-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안내

- 각급 학교는 ‘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’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

12-2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양성 지원/(안전지원국)

□ 관련 근거

-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-4830(2014.07.21.)

□ 추진현황

○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양성 지원

- 사업개요

- * 체계적인 체험학습 안전요원 양성과정의 운영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주제별 체험학습 운영 현장 안착

- 추진방침

- * 운영기간 : 2015년 4월 ~ 12월
- * 운영시간 : 15시간, 3일 과정 직무연수 운영(단, 방학중 15시간 2일 과정으로 운영)
- * 운영형태 :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지정기관인 대한적십자사가 주관하고 경기도 교육청이 지원함, 연수를 신청한 교육지원청에 대한 연수운영비 지원

- 실 적

- * 2014학년도 안전요원연수 이수 현황 (475명* 3기=1,425명, 초.중.고교원)

□ 문제점 및 애로사항

○ 강사 인력풀의 부족

-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강사부족

- *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로 제한되어 있어 강사의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원활치 않아 안전요원 연수운영에 어려움이 있음

□ 향후 계획

○ 다양한 안전 전문강사 인력 확보

- 대한적십자사 뿐만 아니라 소방서, 소방안전협회, 인명구조협회 등 안전요원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과 협의하여 강사 인력을 확보할 예정임

12-3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계획 추진/ [안전지원국]

□ 관련 근거

-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
 - 제11조(교육감의 임무)
-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
 - 제3조(교육감의 책무)

□ 2014년 추진성과

- 학교폭력 실태조사
 - 1차('14년 3~4월) : 초4~고3 재학생 약 117만명 참여, 피해응답률 1.3%
 - 2차('14년 9~10월) : 초4~고2 재학생 약 105만명 참여, 피해응답률 1.2%
-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
 -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(어깨동무학교) 운영(575교)
 - 학교폭력 예방 표준 프로그램(어울림프로그램) 운영(115교)
 - 또래상담(1,655교), 또래조정(790교) 프로그램 운영
- 학교폭력 피·가해학생 지원
 -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전담기관(어울림학교) 운영(1기관)
 - 학교폭력 가해학생 지원 전담기관(경기새울학교) 운영(1기관)
 - 피·가해학생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(Wee센터 25개소)
-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성 신장
 -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장 연수(36회, 2,268명 참석)
 - 학교폭력책임교사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(책임교사 97.7%, 자치위원 90.5% 참석)

□ 향후 계획

○ 단위학교의 자율적 예방활동 활성화

-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(어울림프로그램)
- 학교 여건에 맞는 자율적 예방프로그램 운영(어깨동무학교, 또래활동 등)
- 유형별, 학교급별 맞춤형 예방활동 추진(언어·사이버 폭력, 따돌림 예방)

○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강화

- 학교폭력 조기 진단 및 관리 강화(학교폭력실태조사, 117학교폭력신고센터, 익명상담신고)
-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(Wee클래스, Wee센터, 어울림학교)
- 가해학생 선도 및 재발 방지(장단기특별교육이수기관, 경기새울학교 등)

○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

- 학교 역량 강화 지원(관리자·책임교사·자치위원 연수, 상시컨설팅 등)
- 가정과 함께하는 생활교육 추진(학부모 교육(상담), 학부모자원봉사 등)
- 유관기관과 연계한 예방활동 추진(지자체, 경찰, 시민단체, 종교계 협력)

□ 참고

○ 학교폭력 발생 현황 : 별첨

○ 학교폭력 실태조사 현황 : 별첨

2011년~2014년 학교폭력 발생 현황

(출처 : 교육부 제공 정보공시자료)

시기	학교급	전체학생 수	자치위 심의건수	가해학생 수	피해학생 수
2011 학년도	초	814,927	87	271	126
	중	472,878	1,089	2,814	1,717
	고	462,456	292	916	562
	특수및각종	4,786	0	0	0
	계	1,755,047	1,468	4,001	2,405
2012 학년도	초	775,163	688	581	575
	중	463,600	3,801	7,417	6,885
	고	462,490	1,600	2,487	1,698
	특수및각종	5,076	19	8	4
	계	1,706,329	6,108	10,493	9,162
2013 학년도	초	739,619	424	352	309
	중	458,220	2,242	4,220	3,878
	고	460,580	805	1,079	790
	특수및각종	5,292	5	86	84
	계	1,663,711	3,476	5,737	5,061
2014 1학기	초	732,307	295	243	260
	중	439,988	1,333	2,334	2,317
	고	452,698	688	1,009	690
	특수및각종	5,842	4	76	80
	계	1,630,835	2,320	3,662	3,347

2012년~201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현황

○ 2012 ~ 2014 경기도 학교폭력실태조사 개요

- 2012년

구 분	2012년 1차	2012년 2차
대 상	초 4학년 ~ 고3학년	초 4학년 ~ 고3학년
참 여	약 33만명 참여, 참여율 24%	약 86만명 참여, 참여율 65%
기간/방법	'12.1.19. ~ 2.20. / 우편설문조사	'12.8.27. ~ 10.12. / 온라인 조사

- 2013년

구 분	2013년 1차	2013년 2차
대 상	초4 ~ 고3 전체학생(약 130만명)	초4 ~ 고2 전체학생(약 115만명)
참 여	약 107만명 참여, 참여율 82.2%	약 104만명 참여, 참여율 90.3%
기간/방법	'13.3.25. ~ 4.30. / 온라인 조사	'13.9.9. ~ 10.18. / 온라인 조사

- 2014년

구 분	2014년 1차	2014년 2차
대 상	초4 ~ 고3 전체학생(약 127만 명)	초4 ~ 고2 전체학생(약 111만 명), 학부모 표집대상(141교)
참 여	약 117만명 참여, 참여율 92.2%	학생-약 105만명 참여, 참여율 94.9%, 학부모-약 1만7천명 참여
기간/방법	'14.3. 24. ~ 4. 30./온라인조사	'14.9.15. ~ 10.24. / 온라인 조사

○ 2012 ~ 2014 경기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

년도	참여율	피해응답률	가해응답률
2012년 1차	24.2%	11.7%	
2012년 2차	65.0%	7.9%	4.0%
2013년 1차	82.2%	2.0%	1.1%
2013년 2차	90.3%	1.8%	0.9%
2014년 1차	92.2%	1.3%	0.6%
2014년 2차	94.9%	1.2%	0.6%

※ 2012년 1차 실태조사에서는 가해응답률을 산출하지 않음

※ 2015년 1차 실태조사는 2015년 3월 실시 예정

12-4 40년 이상 경과 건축물 안전점검 /([안전지원국])

□ 관련 근거

- 경기도교육감 공약사항 『 안전한 학교 만들기
 - 노후 건물 등 학교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 진단 후 시설 교체
- 교육부 『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지정·관리 지침』

□ 추진현황

- 정밀점검 실시
 - 대상 : 4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및 C급 건축물
 - 중장기 추진계획

추진년도	정밀점검 대상 건축물수				소요예산액 (천원)	비고
	'14. 12. 기준 40년이상 경과	40년이상 경과 추가발생분	C급 건축물	소 계		
2015년	202개동		6개동	208개동	2,174,195	
2016년	123개동	30개동		153개동	1,584,452	
2017년	123개동	32개동		155개동	1,637,780	
합 계	448개동	62개동	6개동	516개동	5,396,427	

* 학생교육 등에 직접 사용되는 2층 이상의 교육시설물 대상

○ 정밀안전진단 실시

- 대상 : 정밀점검 실시결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
안전진단이 필요한 건축물
- 중장기 추진계획

추진년도	정밀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수		소요예산액	비고
	정밀점검 건축물수	정밀안전진단 건축물수		
2015년	208개동	9개동	430,823천원	
2016년	153개동	8개동	390,400천원	
2017년	155개동	8개동	390,400천원	
합 계	516개동	25개동	1,211,623천원	

* 정밀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수 : 정밀점검 건축물수의 약 5%

□ 기대효과

-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노후 시설물 안전성능에 대한 교육수요자 신뢰도 제고
-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구조물의 결함을 초기에 적출하여 최적의 보수·보강으로 노후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교육환경개선 도모

□ 향후 계획

- 2015.3월 : 정밀점검 용역비 재배정
- 2015.5월 : 정밀점검 추진 결과 보고
- 2015.6월 :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교부계획 수립
- 2015.9월 : 정밀안전진단 추진 결과 보고
- 2015.10월 : 시설물 보수·보강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

□ 사업목적

- 민·관이 합동하여 종합적인 시설안전 컨설팅 수행
- 위탁업체의 점검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외주용역 서비스의 질 향상
- 위탁업체의 안전점검 결과를 종합 관리하여 시설안전 DB로 활용

□ 추진현황

- 소방·전기 안전관리 위탁업체(안전관리자) 현황 조사 ('14.9.)
-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 ('14.10.)
 - 모바일 커뮤니티 활용 안전관리과-위탁 안전관리업체 간 쌍방향 소통 시스템 구성
- 안전점검 실시 및 조치결과 관리 ('14.10.~)
 - 안전 취약학교(월별 8개교 이상)를 대상으로 위탁 안전관리업체와 합동점검 실시
 - 취약 시설 현황 파악 및 위험도에 따른 구분 처리
- 2014년('14.10.~12.) 안전점검 결과

점검학교수	지적건수	조치완료	미조치	미조치사유	비고
15	88	81	7	예산부족	

- 학교 자체예산 부족으로 당장 조치 할 수 없는 경우 교육지원청 예산 수립 시 반영

□ 향후계획

- 안전관리 합동점검 계속 실시 ('14.10.~)
- 소방·전기 안전관리 위탁업체 연계점검 사례집 발간 ('15.12.)

12-6 수련·체육시설 및 기숙사(합숙소) 안전관리 컨설팅/ [안전지원국]

□ 관련 근거

-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

▶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(☞연2회 이상)

□ 추진현황

- 안전점검 : 연 2회 정기안전점검(수련·체육시설은 월1회) 실시
- 컨설팅대상

총보유수			2014년 실시			2015년 예정			합계			컨설팅율(%)		
수련 체육	기숙 사	합숙 소	수련 체육	기숙 사	합숙 소	수련 체육	기숙 사	합숙 소	수련 체육	기숙 사	합숙 소	수련 체육	기숙 사	합숙 소
11	130	132	6	17	31	5	44	71	11	61	102	100	47	77

☞수련·체육시설 : 연 2회 안전관리 컨설팅 실시

☞기숙사(합숙소) : 전체대상 중 취약시설을 선별 연차적으로 실시

- 안전관리컨설팅

- 컨설팅단 구성 : 시설사무관 양순석외 분야별 담당자 3명
- 수행내용
 - ▶ 컨설팅 요청 및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컨설팅 실시
 - ▶ 안전위험요소에 대한 현장조치 지시 및 조치방안 컨설팅
 - ▶ 시설물 유지관리·안전점검 및 개선방안 기술 자문

□ 문제점 및 애로사항

- 시설관리자의 시설물의 유지·안전점검 전문성 부족

□ 향후 계획

-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컨설팅 지속 추진
- 학교시설관리직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실시